# 필수노동자 보호법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37

발의연월일 : 2020. 11. 23.

발 의 자:김영배·도종환·송재호

김홍걸 · 홍성국 · 오영환

강선우 • 박영순 • 윤후덕

윤영덕 · 이광재 · 장경태

김원이 · 임호선 · 이수진비

김민철 · 양정숙 의원

(17인)

#### 제안이유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에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 돌봄, 물류, 교통 등 필수분야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 받고 있 음.

여전히 우리나라는 필수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중에도 의료인, 사회복지 및 돌봄종사자, 택배업 종사자 등은 확진 위험에 노출된 채로 업무는 과중되었으나,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으로 이중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일상적인 재난의 시대에 필수노동자의 위상을 정립하고 이들을 보

호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과 필수노동을 제공받는 민간영역의 중요한 책무임.

이미 미국, 캐나다, 영국, 스위스 등 선진국에서는 필수노동자가 재 난 상황에서 적절히 공공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음.

우리나라도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등으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회유지 기능에 필수적인 직업군을 선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보호·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필수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재난 시 필수업종과 필수노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재난발생 시 신속한 재난 복구와 재난극복을 통해 우리 사회의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난의 대응·복구 과정 및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대면 업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노동 과정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필수노동자'를 재난 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교육 등 근로의 지속성이 필요한 '필수업종' 분야에서 근로하는 '노무제공자'로 규정하고, '노무제공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포괄함(안 제2조).
- 다.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에서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필수업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필수업종의 범위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필수업종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책무로서 필수노동자의 안전 및 보호 강화, 고용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고 추진에 필요한 정책 및 제도를 수립하며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마.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필수노동자의 지원업무 수행에 있어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함(안 제8조).
- 바. 정부가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3년을 단위로 하는 기 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가 심의함(안 제9조).
- 사.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내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시·도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안 제10조).

- 아.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11조제1항).
- 자.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고 민·관 공동체제를 구성하기 위해 부위원장은 정부 측과 민간 측 2인으로 각각 구성하며, 위원의 구성도 정부 측 위원 과 민간 측 위원의 수가 같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및 제5항).
- 차. 시·도지사는 시·도별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도별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도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 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이 수립된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시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시·도지사는 시·도별 기본계획과 함께 보호지원 시행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함(안 제13조).
-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거나 기존에 조성된 관련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함(안 제14조제2항).
- 파.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재정지원을 포함한 지원

- 을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1항 및 제2항).
- 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 탁할 경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일정 성과를 거둔 민간조직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2항).
- 거. 소비자의 제품 및 서비스 구매에 있어 기업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시행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안 제16조).
- 너.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필수노동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수노동 관련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함(안 제18조).
- 더. 필수노동자의 효과적인 보호,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필수업종의 대표성을 가지는 필수노동자 협회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필수노동자 협회가 필수노동자의 지속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공제사업을 할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필수노동자 보호법안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의 대응·복구 과정 및 국민의 안전한 일상 생활 유지를 위하여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대면 업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노동 과정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2. "노무제공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하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노무수령자"란 제5조의 필수노동자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 4. "필수업종" 이란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와 일상생활 유지 등 기본적인 사회기능 유지를 위

하여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교육 등 근로의 지속성이 필요한 업종을 말한다.

- 5. "필수노동자"란 필수업종에서 근로를 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 제3조(필수업종의 범위) ① 필수업종의 범위는 재난 등 긴급상황의 유형에 따라 기본적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1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에서 필수업종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필수업종의 범위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필수업종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역할 및 기본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재난극복과 사회기능의 원활한 운영에도움이 되도록 필수노동자의 안전 및 보호 강화, 고용조건 개선을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시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1. 필수노동자의 안정적, 지속적 근로를 위한 고용조건 개선 관련 정책 및 제도 수립
- 2. 긴급상황 시 필수노동 수행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재난위험수당 지급 등 재정지원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 병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재난 발생 시 예방접종 등을 포함한 필 수노동자 대상 의료조치 제공
- 4. 재난 시 돌봄이 필요한 필수노동자의 가족 및 자녀에게 돌봄서비 스 제공
- 5. 유해 환경에 빈번히 노출되거나 특정 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높은 업종의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수건강진단 지원
- 6. 기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책
- 제5조(노무수령자의 역할 및 기본 책무) ① 노무수령자는 국민의 생명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필수노동자를 존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노무수령자는 직접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필수노동자의 안전한 근로 환경을 확보하고, 필수노동자의 안정적, 지속적 근로를 위하여 고용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 ③ 노무수령자는 재난 상황에 따라 필수노동이 제공되는 업무의 수 행과정을 수시로 조사하여 변화에 따른 인력과 장비, 비용 등이 확

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국민의 역할 및 기본 책무) ① 국민은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와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 고 필수노동자를 존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민은 필수노동자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받을 경우 재난 상황 극복과 복구, 국민의 생명 및 안전, 재산 보호를 위하여 해당 노무 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긴급상황 시 필수노동자에 의한 노무가 제공되는 경우 필수노동의 수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 제7조(필수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① 필수노동자는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재난 등 긴급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지며, 해당 업무수행을 직접적으로 요청한 노무수령자에게 재난에 따른 필요한 필수물품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필수노동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노무수령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제8조(업무영역별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주체의 지정) ① 이 법 제11조 에 따라 구성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는 필수노동자의 업무영 역별로 적절한 지원 주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필수노동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1. 국가기간산업 및 시설 종사자
- 2. 대학부속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종사자
- 3. 전국단위 물류유통업 종사자
- 4. 2개 이상의 인접하지 않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정기노선으로 연결하는 시외고속버스, 시외직행버스, 시외버스, 철도 등 전국단위 대중교통 종사자 등
- 5. 기타 재난 시 국가가 지정하는 필수업종 종사자
- ③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필수노동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1.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2. 종합병원을 포함한 2차 진료기관 종사자
- 3. 광역지방자치단체 범위의 물류 유통업 종사자
- 4.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대중교통 종사자
- 5. 기타 재난 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필수업종 종사자
- ④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필수노동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1.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및 돌봄, 보육서비스 종사자

- 2. 개인병원을 포함한 1차 진료기관 종사자
- 3.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 등의 지역 대중 교통 종사자
- 4.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청소 및 폐기물 관리업무 종사자
- 5. 공동주택의 경비 및 미화, 관리업무 종사자
- 6. 기타 재난 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필수업종 종사자
- ⑤ 위원회는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경우에 중앙행정기 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업무영역별 지원주체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 제2장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 제9조(필수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 관은 제11조에 따른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 및 추진목표의 수립
  -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사항
  -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 4.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5.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6.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민간기업과의 협력 등을 포함한 민관협력 추진, 시행 방안
- 7.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8.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국민 대상 홍보 및 인식 개선 사업 추진 방안
- 9.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 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도별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

- 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별 필수노동자 보호지원계획(이하 "시·도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시·도별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관할 구역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수노동자 보호지원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⑤ 국가는 시·도별 기본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시·도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보호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 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필 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제9조제2항 각 호의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2. 인구 및 산업구조,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필수노동의 정의와 범위

- 3.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 4. 업무영역별 필수노동자 지원 주체 지정에 관한 사항
- 5. 제13조제1항에 따른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시행계획에 따라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이하 "보호지원대상"이라 한다)을 정하 는 사항
- 6.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관 공동체제로 하며 정부 측 부위원장과 민간 측 부위원장은 위원 가 운데 위원장이 임명한 자가 된다.
-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가운데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 한 정부 측 위원과 민간 측 위원의 수가 같도록 하여야 한다.
- 1. 필수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 2. 필수노동자의 노무수령자를 대표하는 사람
- 3.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의 노사관계 또는 노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
- 4.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 5.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 6. 필수노동자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전문가와 전국 단위 노동조합, 필수노동자 협회 등의 종사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 촉하는 사람
- ⑥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고위공무원단과 필수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①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12조(시·도별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 시·도지사는 시·도별 필수노동자 보호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 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별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이하 "시·도별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법규로 정한다.
- 제13조(필수노동자 보호지원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근거하 여 매년 말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보호지원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은 보호지원시행계 획 수립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지원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지원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시·도별 기본계획과 함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보호지원시행계획을 제출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취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보호지원시행계획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4조(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시책의 시행) ① 국가는 이 법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보호지원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거나, 기존에 조성된 관련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 제3장 보호지원 시책추진과 민간과의 협력

- 제15조(민간조직의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참여 독려) 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민간위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일정수준 성과를 거둔 민간조직을 우대할 수 있다.
- 제16조(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전자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소비자가 제품과 서비스 선택・구매과정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여부를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전자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기업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시행 내용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전자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자원봉사자의 필수노동 제공과 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노무수령자는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필수노동을 제공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에 의하여 필수노동을 제공받을 경우노무수령자는 필수노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확보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보상과 물품 등을 제공하여야한다.
- 제18조(필수노동자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①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필 수노동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수노동 관련 교육 및 홍 보계획을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② 교육 및 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필수노동의 정의와 범위, 중요성
  - 2. 필수노동 보호 및 지원 관련 실무교육
  -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우수 민간조직 대상 공공구매 우대 관련 교육
  - ③ 고용노동부장관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재정, 공간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9조(필수노동자 협회의 역할) ① 필수노동자 협회는 필수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필수업 종의 대표성을 가지는 필수노동자 협회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노무수령자는 재난 시 필수노동자의 복리와 관련된 내용을 필수

노동자 협회와 협의할 수 있다.

- 제20조(필수노동자 공제사업의 지원) ① 필수노동자 협회는 필수노동 자를 지속적으로 보호, 지원하고 자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 제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필수노동자 협회가 필수노동자의 자조를 실천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공제사업 등을 재정적·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수노동자 협회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되거나 또는 전환되어야 한다.
- 제21조(포상 및 평가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1.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처우개선, 안전한 근로환경 확보를 우수하 게 실천한 공공기관
  - 2. 소속된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처우개선, 안전한 근로환경 확보를 달성한 민간기업 및 조직
  - ② 고용노동부장관과 관계 중앙정부기관의 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과 관련한 보조금을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성과를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한 중 앙행정기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정부출연기관, 민간 비영리법인에 위 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재난 시 필수노동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재난 시 필수노동자와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며, 이 법의 발효 후빠른 시일 안에 관계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